

# 부 산 가 정 법 원

## 판 결

사 건 2016드단206648 손해배상(기)  
원 고 김00(개명 전 : 김\*\*) (1987년생)  
주소 부산  
소송대리인  
피 고 탁00 (1967년생)  
주소 부산  
소송대리인  
변 론 종 결 2017. 2. 3.  
판 결 선 고 2017. 2. 10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,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3. 1.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5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3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## 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,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2. 2. 22. 소외 김\*\*(1981년생)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, 둘 사이에 아들 1명을 자녀로 두고 있다.

나. 피고는 하이마트 종업원이고 소외 김\*\*은 피고의 직장 상사인바, 소외 김\*\*은 원고가 취업준비차 중국에 단기 연수를 간 사이인 2015. 11. 30. '타임쇼모텔'에서, 같은 해 12. 2. '지모텔'에서 같은 해 12. 29. '쇼모텔'에서 피고와 함께 영화를 보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숙박하였고, 2015. 11.경부터 같은 해 12.경 사이에 수회 카톡이나 전화를 주고받았다.

다. 원고는 2016. 2.경 소외 김\*\*의 카드내역서를 보고 위 모텔 투숙 사실을 알게되어, 소외 김\*\*과 피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추궁하던 중 2016. 2. 4. 피고로부터 위 나.항 기재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각서(갑 제3호증, 이하 '이 사건 각서'라 한다)를 교부받았으며, 같은 날 이러한 각서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, 같은 해 2. 5. 피고의 휴대전화로 피고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아들이 찍은 사진을 전송하고 마치 위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피고의 간통 사실을 소문내어 학교에 잘 다니지 못하도록 할 것처럼 협박하였다.

라. 원고는 위 다.항 기재 상해 및 협박죄로 2016. 10. 18. 부산지방법원 2016고약 16\*\*\*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,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

정되었다.

마. 피고는 이 사건 각서와 관련하여 원고를 강요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, 원고는 2016. 8. 30.자로 '피고도 간통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, 작성을 안 해주려던 것은 아니었으나 계속 구체적인 내용을 적으라는 것이 불편했다'는 취지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행위가 협박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'는 취지로 부산지방법검찰청 2016년 형제46\*\*\*호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.

바. 원고와 소외 김\*\*은 결국 2016. 12. 12.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.

[인정근거 : 다툼이 없는 사실, 갑 제 1 내지 6호증, 갑 8 내지 14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, 을 제4호증, 을 제5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, 변론 전체의 취지]

## 2. 판단

가. 배우자 있는 상대방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이로 인하여 그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,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그 상대방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와 소외 김\*\*이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데 어려움이 없고, 나아가 이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 김\*\*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,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.

나아가 그 위자료 액수는, 피고와 소외 김\*\*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,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소외 김\*\*의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, 부정행위 이후 원고 및 피고의 각 태도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, 10,000,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.

결국,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다음날인 2016. 3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### 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           김수경